

2025

항공교통안전관리자 등 항공안전법

엠북 교통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2시간 30분 완성
- ★ 법, 시행령/규칙(주요내용) 종합
- ★ 최근 개정 및 시행 예정 내용 포함

도서명 : 항공안전법

ISBN : 979-11-7393-047-8

발간일 : 2025-07-15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14,000원



항공안전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6)

제2장 항공기 등록(p32)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p40)

제4장 항공종사자 등(p68)

제5장 항공기의 운항(p112)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p149)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 안전관리(p164)

제8장 외국항공기(p183)

제9장 경량항공기(p190)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p209)

제11장 보칙(p233)

제12장 벌칙(p252~273)

[용어]

이륙은 이수 포함

착륙은 착수 포함

주류등은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

ICAO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약어]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부령은 국토교통부령

한국은 대한민국

고의/중과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외국인사업자는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이착륙은 이륙, 착륙
협약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영어증명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영어증명서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의무보고는 (항공안전)의무보고
자율보고는 (항공안전)자율보고
주류등 영향하는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안전시스템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비고]

-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 검은색은 법
- 보라색은 시행령
- 갈색은 시행규칙
- 붉은색은 시행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5조

1. 목적

- 협약/부속서 표준과 권고에 따라
-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 항행 방법과
- 국가, 항공사업자,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

2. 정의

1) 항공기

-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 부령기준 초과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무인비행장치
- 지구 대기권 내외 비행 항공우주선

(비고)

-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장치
- 공기의 반작용은 지표면/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

(부령 기준)

1) 비행기/헬리콥터는 발동기 1개 이상

a) 사람 탑승시

- 최대이륙중량이 600, 수상비행시 650kg 초과
및

- 조종사 좌석 포함 탑승좌석 수 1개 이상

b) 미탑승시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kg 초과

2) 비행선은 발동기 1개 이상

- 사람 탑승시 조종사 좌석 포함 탑승좌석 수
1개 이상

- 미탑승시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80

kg 초과 또는 길이 20m 초과

3) 활공기는 자체중량 70kg 초과

2) 경량항공기

- 다음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등

- 최대이륙중량 600, 수상비행시 650kg 이하

- 최대 실속속도나 최소 정상비행속도 45노트
이하

- 조종사 좌석 포함 탑승 좌석 2개 이하

- 단발 왕복발동기나 전기모터 장착

- 조종석은 여압 되지 않을 것

- 비행 중 프로펠러 각도 조정 불가

- 고정된 착륙장치 있을 것

3) 초경량비행장치

가) 동력비행장치는 동력 이용 및 다음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a) 탑승자, 연료, 비상용 장비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15kg 이하

- 배터리 중량은 포함

b) 연료 탑재량 19리터 이하

- 전기모터에 의한 동력 이용시는 적용안함

c) 좌석 1개

나)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는 탑승자와

비상용 장비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70kg 이하

- 행글라이더는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으로 조종
- 패러글라이더는 날개에 부착된 줄로 조종

다) 기구류는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 이용

- 유인자유기구
-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kg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
- 계류식기구

라)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수직이착륙기
- 무인비행선은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80kg 이하이고 길이 20m 이하

마) 회전익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요건 갖춘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바) 동력패러글라이더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 얻는 장치를 부착한,
- 착륙장치 없는 비행장치나, 착륙장치가 있고
동력비행장치 요건 갖춘 비행장치

사) 낙하산류는 항력을 발생시켜 대기 중을
낙하하는 사람, 물체 속도를 느리게 함

아) 장관 고시 비행장치

4) 국가기관등항공기

- 국가, 지자체, **국립공원공단**이 소유/임차 및 다음 업무 수행(단, **군용**, **경찰용**, **세관용** 제외)
- 재난/재해 등 수색/구조
- 산불 진화/예방
- 응급환자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 공공 안녕/질서유지

5) 항공업무

가) 항공기 운항 업무

- 무선설비 조작 포함, 항공기 조종연습 제외

나) 항공교통관제

- 무선설비 조작 포함, 항공교통관제연습 제외

다) 항공기 운항관리

라) 정비등(정비/수리/개조)된 항공기등(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부품에 대해
감항성(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 확인,
경량항공기, 장비품/부품 정비사항 확인

6) 항공교통관제 업무(25년 11월 28일 시행)

- 항공기(경량항공기 포함) 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 방지, 항공교통 질서 유지/촉진을 위해 유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는, 다음 업무
- 단, 항공교통관제연습 제외

가)

- 비행장 관제 업무는 비행장, 공항
기동지역(유도로/활주로), 주위 공역을
운항하는,
 - 접근 관제 업무는 비행장/공항 출발/도착하는,
 - 지역 관제 업무는 접근 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 관제구를 비행하는,
 - 항공기 이동 관찰,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 지시, 안내, 정보 전달
- 나) 상기 업무 보조 등 부령상 업무

7) 항공기 사고

- 비행 목적 항공기에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자가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는 비행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가) 사망, 중상, 행방불명

나) 항공기 파손, 구조적 손상

다) 위치 확인, 접근 불가

8)

- **경량항공기사고**는 비행 목적으로

경량항공기 발동기가 시동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 **초경량비행장치사고**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비행 목적으로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 가) 사망, 중상, 행방불명
- 나) 추락, 충돌, 화재 발생
- 다) 위치 확인, 접근 불가

9) 항공기준사고

-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10) 항공안전장애

- 항공기사고/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것

1) 항공안전위해요인

- 항공기사고/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발생, 발생 가능성 확대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물적/인적요인

2) 위험도

-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 저해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과 심각도

3) 항공안전데이터

-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기능장애 보고
- 비행자료, 분석결과
- 레이더 자료, 분석결과
- 항공안전 의무/자율 보고된 자료

- 사고 등 조사결과
-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결과보고
- 기상업무 정보
- 공항운영자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관리하는 자료
- 항공사업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
- 항공협회 업무수행 중 수집한 정보/통계
-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이 한국과 공유한 자료
- 위험물 포장, 적재, 저장, 운송,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상 위험 야기 우려 있는 사건
- 항공기/조류 충돌

- 장관 고시 자료

4) 항공안전정보

- 항공안전데이터를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 정리, 분석한 것

5) 비행정보구역

-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 비행과 수색, 구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부속서에 따라 장관이 명칭, 수직/수평 범위를 지정/공고한 구역

6) 영공

- 한국 영토, 내수 및 영해의 상공